산학협력단

수신자 전 기관
(경유)
제목 (TITLE) 연구비 발생이자 기준안내 고시

1. 관련 :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-10273(2019. 4. 30.)「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」제18조(발생이자)
2. 위와 관련하여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산출기준
연구비	• **산출식**: 총 연구비(위탁·협동연구비, **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관액 제외**)×0.05%(은행이자율)×0.35(소멸지수)÷입금횟수 • **처리 방법**: 연구기간 내 **1회**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산입하여 사용 혹은 반납 ※ 단, 입금연구비가 당초 계약연구비보다 작은 경우 입금된 연구비 기준으로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.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반납기준 산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연구 중단 시	• **산출식**: [(입금된 연구비(위탁·협동연구비, **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이관액 제외)**×0.05%(은행이자율)×0.35(소멸지수)÷입금횟수)]×(연구수행기간÷12개월(365일)) • **처리 방법**: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여 사용 혹은 반납
학생인건비 (신 설)	• **산출식**: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입금액×0.05%(은행이자율)×0.35(소멸지수)÷입금횟수 * 입금 횟수는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관이 발생한 횟수로 산정하되, 1개월에 1회 이상 입금된 경우라도 1회로 산정함 ex) 3월(1회), 5월(4회), 9월(1회), 12월(2회) 입금된 경우 해당연도 입금횟수는 **4회** • **처리 방법**: 연 1회, 전년도(1.1. ~ 12. 31.)에 발생한 이자를 산출하여 해당 계정에 산입
비고	10원 미만은 절사

붙임 「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」 개정전문 1부. 끝.

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

대리 **현혜경** 팀장(대) **김지혜** 부장 **박준철** 본부장 **전결 06/25 최명선**

협조자 본부장 **유호상**

시행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-14727 (2019.06.25.) 접수 농업생명과학대학-18390 (2019.06.25)

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/
전화 02-880-2042 전송 02-885-4482 /gold0831@snu.ac.kr / 공개